

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1년
신청인	성명(기관명)	생년월일	
	주소(소재지)		
	전화번호	대상물 소유자와의 관계	
대상물	명칭		
	대상물 구분	용도	수량
	소재지(보관 장소)		
	구조 및 규모		
	연혁		
	소유자 (또는 관리자)	성명	생년월일
주소		전화번호	
등록신청 사유			
그 밖의 사항			

「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6조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국가유산청장 귀하

신청인(대표자) 제출서류	1. 대상 근현대문화유산 소유자의 동의서(소유자가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) 2. 대상 근현대문화유산의 사진, 도면(배치도·평면도·입면도·단면도 등) 및 문헌 자료 사본(문헌 자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) 3. 「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대상 근현대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서 1부 4. 대상 근현대문화유산의 변형 및 수리 이력(변형 및 수리 이력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) 1부	수수료 없음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1. 건축물대장 2. 토지(임야) 대장 3. 건물등기사항증명서 4. 토지등기사항증명서	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 공무원이 위 확인사항 중 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*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행정사항

소유자나 관리자가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시·도지사는 「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조제2항 및 「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2조제3항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.

-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합니다) 및 시·도지사의 검토의견서
- 시·도지사의 조사보고서
- 「국가유산기본법」 제9조의3에 따른 시·도유산위원회의 심의 관련 자료
- 대상 근현대문화유산의 위치도, 지적도 및 지형도면

처리 절차

신청인	경유기관		처리기관 (담당부서)
	관할 시·군·구 및 시·도		국가유산청 (국가등록문화유산 담당부서)
신청서 작성 →	시·군·구 → 시·도 →	접수 ↓ 국가유산위원회 심의 ↓ 등록	
통보 ←	시·군·구 ← 시·도 ←		